

녹색성장 연구 10-16-4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연구

()

(FIT)

(RPS)

- RPS -

이 준 서

()

(FIT)

(RPS)

- RPS -

A Legislative Study on Feed - in Tariff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Focused on Japanese RPS law -

연구자 : 이준서(부연구위원)
Lee, Jun-Seo

2010. 10. 29.

목 차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7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
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エネルギー供給構造高度化法) 77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
利用の促進に関する方針) 103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목 적) 제 1 조 이 법률은 국내·외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따른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공급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정 의)</p> <p>제 2 조 ① 이 법률에서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1964년 법률 제170호)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전기사업자, 동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전기사업자 및 동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특정규모전기사업자를 말한다.</p> <p>② 이 법률에서 “신에너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에너지를 말한다.</p> <p>1. 풍 력</p>		<p>(정 의)</p> <p>제 1 조 ① 이 성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년 법률 제62호.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p> <p>② 이 성령에서 “가입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법 제6조에 따라 기준이용량의 감소에 충당할 수 있</p>	<p>◎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이 정하는 것을</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2. 태양광 3. 지 열 4. 수력(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5. 바이오매스(동식물에서 유래하는 유기물로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원유, 석유가스, 가연성천연가스 및 석탄 및 이들로부터 제조되는 제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를 열원으로 하는 열 6. 전 각 호의 것 이외에, 석유(원유 및 휘발유, 중유, 그 밖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p>	<p>(정령으로 정하는 수력 등) 제 1 조 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력은 출력 1,000kW 이하의 수력발전소의 원동력으로 사용되는 수력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제6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동향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p>	<p>는 양을 말하며, 신에너지등발전설비를 사용하여 태양광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전기로서 경제산업대신이 정하는 것(이하 “특정태양광전기”라 한다)의 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증량 또는 감량의 기록을 하기 위한 구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p>	<p>정하는 건(고시)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이 정하는 것은 2009년 11월 1일 이후 태양광발전설비에 의해 태양광을 변환하여 얻어지는 전기(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규모전기사업자의 수요자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발전능력이 500kW 이상인 것, 발전사업목적으로 설치된 것 및 주간의 전력소비가 일 년간에 걸쳐 거의</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같다)를 열원으로 하는 열 이외의 에너지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p> <p>③ 이 법률에서 “신에너지등전기”란 신에너지등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신에너지등을 변환하여 얻어지는 전기를 말한다.</p> <p>④ 이 법률에서 “신에너지등발전설비”란 신에너지등을 전기로 변환하는 설비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을 것을 말한다.</p> <p>⑤ 이 법률에서 “이용”이란 공급하는 전기(전</p>	<p>이오매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효시키거나 열분해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소 또는 일산화탄소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에너지(동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열을 제외한다. 제3조에서 같다)로 한다.</p>		<p>없거나 주간의 전력소비가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시설 또는 설비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한 것에 한한다)로 한다.</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에너지등 전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신에너지등전기의 이용목표)</p> <p>제 3 조 ① 경제산업대신은 4년마다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의 의견을 들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이후의 8년간에 관한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전기의 이용의 목표(이하 “신에너지등전</p>		<p>(신에너지등전기이용목표)</p> <p>제 2 조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이 정하는 신에너지등전기 이용목표는 2003년을 첫 해로 하되 같은 해 이후의 4년마다의 각 해의 4월을 시기(始期)로 정하도록 한다.</p>	<p>◎ 2007년도 이후의 8년간에 관한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전기의 이용의 목표(개정고시)</p> <p>1. 신에너지등전기의 이용의 목표량에 관한 사항</p> <p>신에너지등전기의 이용의 목표량은 다음 표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연도별로 각각 같은 표의 하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기이용목표”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p> <p>② 신에너지등전기용목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신에너지등전기의 이용의 목표량에 관한 사항</p> <p>2.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신에너지등발전설비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력계통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p>	<table border="1"> <tr> <td>2007</td><td>2008</td><td>2009</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d>2014</td> </tr> <tr> <td>86.7</td><td>92.7</td><td>103.8</td><td>124.3</td><td>128.2</td><td>142.1</td><td>157.3</td><td>173.3</td> </tr> </tabl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6.7	92.7	103.8	124.3	128.2	142.1	157.3	173.3	<p>상란: 연도, 하란: 목표량(억kWh)</p> <p>2.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신에너지등발전설비에 관한 사항</p> <p>신에너지등발전설비는 앞으로 이용목표 및 기준이용량을 고려하여 착실하게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고, 발전·공급비용의 저감이나 잠재성을 고려한 적지 선정 등을 통하여, 당해 발전설비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전개가 필요하다.</p> <p>신에너지등발전설비 중에</p>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6.7	92.7	103.8	124.3	128.2	142.1	157.3	173.3										

법 른	시 행령	시 행규칙	고시 등
			<p>서도 태양광에 관계되는 발전설비에 관해서는, 다른 전원과 비교하여 기술 혁신의 여지가 크고, 수요의 창출에 의한 대폭적인 가격저감·보급 확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서의 다른 전원과 발전비용의 차를 고려한 추진이 필요하다.</p> <p>3. 그 밖의 사항(전력계통의 정비에 관한 사항)</p> <p>에너지 등에 의한 발전은 출력이 불규칙하게 추이함과 동시에, 발전소건설적지는 송전계통이 정비</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③ 경제산업대신은 신에너지 등의 보급의 상황, 석유의 수급상황, 그 밖의 경제적·사회적 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p>			<p>되어 있지 않은 원격지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그 대규모의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책을 고려하면서 주파수 변동억제 등의 계통 안정화나 기존 계통의 증강 등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인정하는 때에는, 종합 자원에너지조사회 의 견을 들어, 신에너지등 전기이용목표를 변경하 도록 한다.</p> <p>④ 경제산업대신은 신에 너지등전기이용목표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대 신 및 농림수산대신 또 는 국토교통대신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p> <p>⑤ 경제산업대신은 신에 너지등전기이용목표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p>	<p>(의견의 청취)</p> <p>제 2 조 경제산업대신은 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 는 신에너지등전기이용 목표를 정하거나 변경하 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의 환경 대신의 의견, 그리고 바 이오매스의 유효한 이용 의 확보 관점에서의 농 림수산대신 및 국토교통</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록 한다.</p> <p>(신에너지등전기의 기준이용량)</p> <p>제 4 조 ① 전기사업자는 매년 6월 1일까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년간(이하 “신고연도”라 한다) 이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신에너지등전기의 기준이용량(그 전기사업자가 당해 신고연도에 이용을 하여야 하는</p>	<p>대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기준이용량의 신고)</p> <p>제 3 조 ① 법 제4조제1항의 신고는 당해 신고연도의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양식 제1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조제1항의 기준이용량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당해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전기공급량에,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신에너지등전기의 이용의</p>	<p>◎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태양광전기의 이용의 목표량(고시)</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것으로서, 당해 신고연도의 전년도에 그 전기사업자의 전기의 공급량(다른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한 것을 제외한다. 제10조에서 같다)을 기초로 하여 신에너지등전기이용목표 및 신에너지등발전설비의 도입에 따라 필요해지는 전압의 조정을 위한 발전설비의 보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신에너지등 전기의 양을 말한다. 이</p>		<p>목표량 중 당해 신고연도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특정태양광전기의 이용의 목표량으로서 경제산업대신이 정하는 양 중 당해 신고연도에 관계되는 부분을 빼서 얻은 양을 모든 전기사업자의 당해 연도의 전년도의 전기공급량의 합계량에서 빼서 얻은 비율을 곱하여 얻은 양으로 한다.</p> <p>③ 법 제4조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당해 전기사업자</p>	<p>특정태양광전기의 이용의 목표량은 다음 표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연도별로 각각 같은 표의 하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375 619 1731 703"> <thead> <tr> <th>2009</th> <th>2010</th> <th>2011</th> <th>2012</th> <th>2013</th> <th>2014</th> </tr> </thead> <tbody> <tr> <td>3.8</td> <td>14.0</td> <td>17.9</td> <td>23.8</td> <td>31.0</td> <td>39.0</td> </tr> </tbody> </table> <p>상란: 연도, 하란: 목표량(억kWh)</p> <p>◎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에 관한 유의사항 등(통지)</p>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8	14.0	17.9	23.8	31.0	39.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8	14.0	17.9	23.8	31.0	39.0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하 같다),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연도의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의 공급을 개시한 전기사업자에 관한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4월 1일부터”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로, “당해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그 전기사업자의 전기의 공급량”은 “당해</p>		<p>의 당해 신고연도의 전 년도의 전기 공급량으로 한다.</p> <p>④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그 성명 또는 주소 및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을 한 때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전항의 신고는 양식 제2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하여야 한다.</p>	<p>제1 기준이용량의 산정</p> <p>1.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2년 경제산업성령 제11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말하는 “모든 전기사업자의 당해 연도의 전년도의 전기공급량의 합계량”에 관해서는, 매년 5월에 경제산업성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년 법률 제62호. 이하 “법”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하여 공표하는 전년도의</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신고연도의 그 전기사업자의 전기의 공급량의 예측”으로 본다.</p> <p>제 5 조 전기사업자는 매년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이용량(다음 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 제8조에서 같다) 이상의 양의 신에너지등전기를 이용하여야 한다.</p>		<p>(신에너지등전기의 이용)</p> <p>제 4 조 법 제5조의 이용은 신에너지등전기(특정태양광전기를 제외한다. 제11조에서 같다)를 스스로 발전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어야 한다.</p> <p>제 5 조 ① 전기사업자 또는 신에너지등발전사업자(신에너지등발전설비를 이용하여 발전하거나 발전하려는 자를 말한다.</p>	<p>건국의 전기의 공급량을 이용하도록 한다.</p> <p>2. 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기의 공급량의 예측”에 관해서는,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1964년 법률 제170호)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수지견적서에 기재된 판매 전력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특정규모전력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측의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p> <p>3. 법 부칙 제3조에서 규</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이하 같다)는 그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증량 또는 감량의 기록을 하기 위한 구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신고는 양식 제3에 따른 신고를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p> <p>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신고에 기초하여 구좌를 개설하고 구좌부(口座簿)를 비치하도록 한다.</p> <p>④ 구좌부는 각 가입자의 구좌별로 구분하며, 각 구좌에는 다음 각 호</p>	<p>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하여 얻은 각 전기사업자의 기준이용량에 관해서는 스스로 산출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제산업성에 신고하도록 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일반전기사업자, 특정전기사업자 또는 특정규모전기사업자 또는 신에너지등개발사업자의 구분 <p>⑤ 구좌부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이</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하 같다)으로 작성할 수 있다.</p> <p>(성명 등의 변경)</p> <p>제 6 조 ① 가입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신고는 양식 제4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p> <p>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신고에 기초하여</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그 자의 구좌의 기록을 변경하도록 한다.</p> <p>(구좌의 폐지)</p> <p>제 7 조 ① 가입자는 전기사업자 또는 신에너지등발전사업자가 아니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좌를 폐지하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감량의 기록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전항의 신고는 양식 제5에 따른 신고서를 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출하는 것이어야 한다.</p> <p>③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신고에 기초하여 당해 구좌를 폐지하도록 한다.</p> <p>(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기록)</p> <p>제 8 조 ① 신에너지등전기를 공급하거나 공급을 받은 가입자가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증감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양식 제6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도</p>	<p>◎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에 관한 유의사항 등(통지)</p> <p>제2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기록</p> <p>1.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기록이 이루어지는 구좌</p> <p>규칙 제8조제1항의 신고에 따라 신에너지등전기상당</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2.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3.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4.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p>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신고에 기초하여 그자의 구좌에 1,000kWh를 1단위로 하여, 그 신고에 관계되는 신에너지등전기의 공급량(당해 신에너지등전기가 바이오매스에너지(바이오매스를 열원으로 하는 열 또는 바이오매스를 발효시</p>	<p>량의 기록이 이루어지는 구좌와, 구좌에의 기록에 있어서 필요한 동의서 등의 내용은 이하와 같다.</p> <p>(1) 전기사업자가 스스로 신에너지등전기를 발전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좌: 당해 전기사업자의 구좌 - 동의서 등: 구좌에 기록되는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에 관계되는 신에너지등전기를 법 제5조에 따른 의무이행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기사업자에 의한 확인서(양식 제1)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키거나 열분해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소 또는 일산화탄소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화시켜 얻어지는 전기인 경우에는, 전기의 공급량에,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전기의 양이 당해 전기의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바이오매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얻은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신에너지등전기상당</p>	<p>(2) 전기사업자가 신에너지 등전기의 공급을 함에 있어서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을 공급처전기사업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좌: 당해 신에너지 등전기를 발전한 발전사업자의 구좌 - 동의서 등: 당해 신에너지 등전기에 관계되는 신에너지 등전기상당량의 기록을, 당해 전기의 공급원인 발전사업자의 구좌에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당해 신에너지 등전기의 공</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량의 증감을 기록하도록 한다.</p> <p>(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감량 또는 증량의 기록)</p> <p>제9조 ①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거래를 한 가입자가 자신의 구좌에서의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감량 또는 증량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식 제7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p> <p>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신고에 기초하여, 그 자의 구좌의 신에너지등전기상</p>	<p>급을 받은 전기사업자에 의한 동의서(양식 제2) 및 구좌에 기록되는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에 관계되는 신에너지등전기를 법 제5조에 따른 의무이행에 충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당해 신에너지등전기의 공급을 받은 전기사업자에 의한 확인서(양식 제1)</p> <p>(3) 발전사업자가 신에너지등전기의 공급을 함에 있어서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을 공급처 전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p> <p>- 구좌: 당해 신에너지등전</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기준이용량의 변경) 제6조 전기사업자는 다른 전기사업자가 그 기준이용량을 초과하는 양의 신에너지등전기의 이용을 하는 경우, 당해 다른 전기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얻어 그 초과하는 분에 상당하는 신에너지등전기의 양을 자신의 기준이용량에서 감소시킬</p>		<p>당량의 감량 또는 증량을 기록하도록 한다.</p> <p>(법 제6조에 따른 기준이용량의 감소) 제10조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고연도의 다음 연도의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감소에 충당할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을 제시하고, 양식 제8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에</p>	<p>기의 공급을 받은 전기사업자의 구좌</p> <p>- 동의서 등: 당해 신에너지등전기에 관계되는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기록을, 당해 전기의 공급처인 전기사업자의 구좌에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당해 신에너지등전기를 발전한 발전사업자에 의한 동의서(양식 제3) 및 구좌에 기록되는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에 관계되는 신에너지등전기를 법 제5조에 따른 의무이행에 충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당해 신</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수 있다.</p> <p>제7조 ① 경제산업대신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이용량에 상당하는 양의 신에너지등전기</p>		<p>따라 제시된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에 관하여, 당해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증감의 기록을 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에너지등전기를 이용한 전기사업자가 그 의무이행에 충당하지 않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승인을 하도록 한다.</p>	<p>에너지등전기의 공급을 받은 전기사업자에 의한 확인서(양식 제1)</p> <p>2. 중복된 기록신고의 취급</p> <p>동일한 신에너지등발전설비를 이용하여 동일 기간에 발전된 신에너지등전기에 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p> <p>3. 끝수(1천kWh 미만의 양)의 취급</p> <p>규칙 제8조제2항에서 구좌에의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기록의 단위를 1,000</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의 이용을 제5조에 따라 하는 것이 곤란해진 전기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신고연도의 기준이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p> <p>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이용량을 감소시킨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한다.</p>			<p>kWh로 하고 있으나, 신고서에 기재된 신에너지등전기기록량 중 1,000kWh 미만의 양에 관해서는, 동일연도 중에 동일한 신에너지등발전설비를 이용하여 발전된 신에너지등전기에 관계되는 신에너지등전기기록량(당해 신에너지등전기기록량을 제외한다)을 동일한 구좌에 기록하는 때에, 신고서에 기재된 신에너지등전기기록량에 합산하도록 한다.</p> <p>4. 기록신고가 가능한 기간</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권고 및 명령)</p> <p>제8조 ① 경제산업대신은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등 전기의 이용을 하는 양이 기준이용량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p>			<p>어떠한 연도 중에 발견한 신에너지등 전기에 관하여, 신에너지등 전기상당량으로 구좌에의 기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의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p> <p>◎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에 관한 유의사항 등(통지)</p> <p>제4 법 제8조제1항의 권고에 관한 “정당한 사유”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경</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정하는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5조에 따라 신에너지등의 이용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신에너지등의 이용을 하는 양이 기준이용량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5조에 따라 신에너지등의 이용을 하도록 명할 수 있</p>		<p>(명령발동의 기준)</p> <p>제11조 법 제8조제2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신에너지등을 이용한 양이 기준이용량을 상당 정도 하회하고 있는 경우로 한다.</p>	<p>제산업대신은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등의 이용을 하는 양이 기준이용량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신에너지등의 이용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는 권고의 발동의 시비를 판단하는 때에 개별적으로 검토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다.			<p>는 때에는 당해 각 항목에서 정하는 양을 하회하는 기준이용량 미달분(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량)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p> <p>1. 예탁(banking)</p> <p>신고연도의 전년도에 이용된 신에너지등전기에 관계되는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 중 구좌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당해 전년도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의무 이행에 충당되지 않았던 것이 있는 경우: 당해</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p> <p>2. 상한가격</p> <p>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에 관계되는 상한가격은 1kWh 당 11엔으로 한다(또한, 이로써 태양광발전 또는 풍력발전(사업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것)의 발전설비로부터 판매전력요금단가로 잉여전력을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p> <p>수급의 불균형 등의 사유로, 1kWh당 11엔 이하의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가격으로는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을 확보할 수 없었던</p>

법 른	시 행령	시 행규칙	고시 등
			<p>경우: 당해 신에너지등전 기상당량</p> <p>3. 태양광발전</p> <p>(1) 2011년도 이후 2014년 도까지의 의무이행에 있어 서는, 태양광발전의 발전 설비에 의한 신에너지등전 기(규칙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태양광전기 를 제외한다) 또는 신에너 지등전기상당량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의무이행 또는 기준이용량감소에 충당한 경우: 당해 신에너지등전 기의 양 및 신에너지등전 기상당량</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2) 2012년 이후 2015년도까지의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신고연도의 전년도에 이용된 태양광발전의 발전 설비에 의한 신에너지등전기에 관계되는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 중 구좌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당해 전년도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의무의 이행에 충당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으로 2배로 한 양. 또한, 이 경우 당해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에 관해서는 “1. 예탁(banking)”은</p>

법 른	시 행령	시 행규칙	고시 등
			<p>적용하지 아니한다.</p> <p>4. 차입(borrowing)</p> <p> 기준이용량 미달분에서 본 항 이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빼더라도 잔여량이 있는 경우: 당해 잔여량(다만, 신고연도의 기준이용량의 20%를 상한으로 한다. 이하 “차입량”이라 한다.</p> <p> 다만, 차입을 한 경우, 신고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당해 다음 연도에서 신에너지등의 이용을 한 양에서 신고연도의 차입량을 뺀 다음, 다음 연도에</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신에너지등발전설비의 인 증) 제 9 조 ① 신에너지등을 전기로 변환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발전하거나 발 전하려는 자는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도 적합하다는 것 에 관하여 경제산업대신 의 인증을 받을 수 있 다.</p>		<p>(인증절차) 제12조 ① 법 제9조제1항 의 인증의 신청은 양식 제9에 따른 신청서를 제 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발전설비의 구조도 및 배선도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③ 전2항의 서류의 제출 부수는 각 1통(당해 신 청에 관계되는 발전이 바이오매스에너지를 전</p>	<p>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 부의 판단을 하도록 한다.</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1. 당해 발전하거나 발전하려는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당해 신에너지등을 전기로 변환하는 설비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p> <p>2. 그 발전 방법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p>		<p>기로 변화하는 것인 경우에는 3통)으로 한다.</p> <p>(인증기준) 제13조 ① 법 제9조제1항 제1호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신에너지등전기의 공급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인증에 관계되</p>	<p>◎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의 처분에 관한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훈령) 제1 신청에 대한 처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에너지등발전설비의 인증에 관해서는, 동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는 발전이 지열을 전기로 변화하는 것인 경우에는, 지열자원인 열수(熱水)를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는 발전의 방법일 것</p> <p>2. 당해 인증에 관계되는 발전이 수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수력발전소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발전의 방법일 것</p> <p>가. 댐식 또는 댐수로식의 수력발전소: 수</p>	<p>우에 한다.</p> <p>(공통사항)</p> <p>(1) 법 제5조에 따른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제공하는 전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전력량계에 관해서는,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2년 경제산업성령 제11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배선도에 있어서, 당해 전력량계가 계량법(1992년 법률 제51호) 제16조를 위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도, 공업용 수도 또는 관개를 위한 물 또는 하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물의 방류에 따라 발생하는 수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의 방법</p> <p>나. 수로식의 수력발전소: 당해 발전소의 원동력으로 사용되는 수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의 방법</p> <p>3. 당해 인증에 관계되</p>	<p>판명되는 것일 것. (지열)</p> <p>(2) 당해 인증에 관계되는 발전이 지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지열자원인 열수(수증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현저히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발전의 방법일 것. 구체적으로는, 지열자원인 열수를 2차 계통을 이용하는 등 간접적으로 이용한 후 지중으로 환원시키는 발전 방법이나 온천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지열자원인 열수를 부차적으</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는 발전이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전기로 변화하는 것인 경우에는, 바이오매스비율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당해 비율 및 그 산정 근거를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에 기재하면서 발전하는 방법 일 것.</p>	<p>로 이용하는 발전방법 등을 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생산정(生産井)의 굴착을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고, 당해 지열자원인 열수를 상당 정도 감쇠시키지 아니할 것.</p> <p>(수력)</p> <p>(3) 당해 인중에 관계되는 발전이 수력을 전기로 변화하는 것 가운데 댐식 또는 댐수로식의 수력발전소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댐(기반시설에서 제방까지의 높이가 15m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 하천법(1964</p>

법 률	시 행령	시 행규칙	고시 등
			<p>년 법률 제167호) 제23조에 따른 유수의 점유의 허가 시에 동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건(이른바 “수리사용규칙”)에 따라 규칙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p> <p>(바이오매스)</p> <p>(4) 당해 인증에 관계되는 발전이 규칙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이오매스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발전방법이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가. 일반폐기물발전의 경우, 구 후생성통지(1977년 11월 4일 還整95 『일반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지도에 따른 유의사항에 관하여』)에 따라 쓰레기의 종류조성분석을 하고, 투입하는 연료에서 차지하는 바이오매스(종이, 포류(布類), 나무, 대나무, 짚류, 음식물쓰레기(동식물성 찌꺼기, 알껍데기, 조개껍데기를 포함한다))인 연료의 비율을 연 4회 이상 산정하여, 그 산정결과 및 산정근거를 장부에 기록하면</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서 발전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신청자로부터 당해 통지에 따라 행해진 조성 분석의 결과에 관하여, 신청자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실적에 따라 제출을 받음으로써, 과거 1년간의 데이터가 포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또한, 제출을 받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관해서는, 앞으로 구 후생성통지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것이 담보되어 있을 것.</p> <p>나. 산업폐기물발전의 경우, 연료인 산업폐기물에</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관하여 산업폐기물관리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면 (연료인 산업폐기물이 바이오매스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으로, 그 종류조성·중량·열량을 파악하고, 투입하는 연료에서 차지하는 바이오매스인 연료의 비율의 평균치를 매년 산정하여, 그 산정결과 및 산정근거를 장부에 기록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바이오매스인지 여부를 파악에 관하여, 적어도 1971년 10월 25일 環整 45</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따른 유의사항에 관하여」에 따른 분류 이상의 정밀한 정도로 파악할 것. 그리고 동 통지에서 말하는 오니, 폐유에 관해서는 당해 연료를 바이오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의 종류 및 당해 연료에 있어서 바이오매스에 관계되는 부분의 내역 및 그 중량·열량이 판명될 것. 또한, 위 사항의 확인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물성 등에 관</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한 관리표의 샘플의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의 관리표 포맷의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p> <p>다. 그 밖의 경우에 관해서는 위 사항에 준하는 방법에 따를 것.</p> <p>◎ 경제산업대신의 처분에 관계되는 표준처리기간에 관한 규정(별표 73) (신에너지등발전설비인증부분(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발취)</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1	2
			9 1 (1 1)	1 1
			9 1 (2 2)	2 2
			4 1 (1 1)	1 1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인증 신청을 받은 발전이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table border="1" data-bbox="1368 379 1740 608"> <tr> <td data-bbox="1368 379 1641 480">4</td> <td data-bbox="1641 379 1691 480">1</td> <td data-bbox="1691 379 1740 480"></td> </tr> <tr> <td data-bbox="1368 480 1641 608">(</td> <td data-bbox="1641 480 1691 608">2</td> <td data-bbox="1691 480 1740 608">2</td> </tr> <tr> <td data-bbox="1368 608 1641 643"></td> <td data-bbox="1641 608 1691 643">)</td> <td data-bbox="1691 608 1740 643"></td> </tr> </table> <p>※1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 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 의 경우의 처리기간 ※2 그 밖의 신청의 경우 의 처리기간</p> <p>◎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 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에 관한</p>	4	1		(2	2)	
4	1											
(2	2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항의 인증을 하도록 한다.</p>			<p>유의사항(통지) 제5 재생이용에 대한 배려 1. 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재사용, 재생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배려 법의 국회 의결에 있어서는,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 ... 폐기물발전, 그 중에서도 특히 폐플라스틱 등의 석유기원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산업폐기물발전의 취급에 관하여, ... 순환형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머티리얼 리사이클(material-recycle)의 추진을 저해하지 않도록”</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부대결의가,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폐기물발전, 특히 폐플라스틱 등을 연료로 하는 산업폐기물발전의 취급에 관해서는, 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재사용, 재생이용의 추진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부대결의가 각각 이루어져 있는 바, 폐기물인 바이오매스를 열원으로 하는 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한 신에너지등전기의 발전에 관해서는, 이러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취지가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p> <p>2. 목질바이오매스발전을 설비 인증하는 때의 확인 특히, 신에너지등발전설비가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2000년 법률 제110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순환자원인 목질의 바이오매스를 연료 또는 원재료로 한 바이오매스발전설비인 경우에는, 목질의 바이오매스의 재생이용의 촉진을 현저히 해치지 아니하고 연료 또는 원재료를 조달하여 발전할 것이 요구</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③ 경제산업대신은 신에너지등발전설비에 관하여 제1항의 인증을 하려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p>	<p>(협의) 제3조 경제산업대신은 법 제9조제1항의 인증(다음 조의 변경의 인증을 포함</p>	<p>(협의) 제14조 경제산업대신은 법 제9조제1항의 인증(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p>	<p>된다. 이 때문에, 당해 목질의 바이오매스의 발전설비에 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비 인증함에 있어서는, 목질의 바이오매스의 재생이용의 촉진을 현저히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여, 목질의 바이오매스의 재생이용이 현저히 해쳐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따라 미리 농림수산대신, 국토교통대신 또는 환경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p>	<p>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 당해 인증과 관계되는 발전이 바이오매스를 열원으로 하는 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것 또는 바이오매스를 발효시키거나 열분해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소 또는 일산화탄소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것인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 국토교통대신 또는 환경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2년 정령 제357호.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변경의 인증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 당해 인증에 관계되는 발전이 다음 각 호의 것을 열원으로 하는 열 또는 발효시키거나 열분해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소 또는 일산화탄소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것인 때에는, 각각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④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인증을 받은 발전이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1. 농림수산성의 소관 사무에 관계되는 바이오매스: 농림수산대신</p> <p>2. 국토교통성의 소관 사무에 관계되는 바이오매스: 국토교통대신</p> <p>3. 폐기물(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7호. 이하 “폐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바이오매스: 환경대신</p>	<p>◎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경제산</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 전 각 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제1항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p>	<p>(변경의 인증) 제4조 법 제9조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인증을 받은 신에너지등을 전기로 변환하는 설비 또는 발전의 방법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경제산업성</p>	<p>(변경의 인증) 제15조 영 제4조의 변경의 인증 신청은 양식 제10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업대신의 처분에 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훈령) 제2 불이익처분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에너지등발전설비의 인증의 취소는 동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는 것으로, 특단의 기준은 작성하지 아니한다.</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변경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폐지 등의 신고) 제5조 ① 법 제9조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인증을 받은 에너지등을 전기로 변환하는 설비를 폐지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한 때에</p>	<p>(폐지의 신고) 제16조 영 제5조제1항의 폐지의 신고는 양식 제11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변경의 신고) 제17조 ① 영 제5조제2항의 변경의 신고는 양식 제</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p>12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발전설비의 명칭으로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공급한 전기의 양 등의 신고)</p> <p>제10조 전기사업자는 매년 6월 1일까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전년 4월 1일부터 그 해 3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의 전기의 공급량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법 제10조에 따른 신고)</p> <p>제18조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매년도 신고연도의 다음 연도의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양식 제13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0조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p>1. 당해 전기사업자의 구좌에 기록된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 중 법 제5조에 따라 의무이행에 충당하는 것의 양</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2. 당해 신고연도에 이용 한 신에너지등전기 중 당 해 전기사업자가 스스로 발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부터 구입한 신에너지등전 기(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 의 증량의 기록을 하기 위 하여 제공한 것을 제외한 다)로서, 공급하는 전기(전 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한 양(당해 신 에너지등전기가 바이오매 스에너지를 변환시켜 얻어 진 전기인 경우에는 전기 의 공급량에 바이오매스비</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장부의 기재) 제11조 전기사업자 또는 제9조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그 이용을 하거나 발전한 신에너지등전기의 양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p>		<p>을을 곱하여 얻은 양을 말한다)</p> <p>(장부의 기재) 제19조 ① 법 제11조의 장부는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소별로, 법 제9조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해 인증에 관계되는 설비가 소재하는 사업소별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기재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자의 구분에</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따라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한다.</p> <p>1. 전기사업자: 신에너지등 발전설비별 신에너지등 전기의 공급을 받은 양(당해 신에너지등전기가 바이오매스에너지를 변환하여 얻어지는 전기인 경우에는, 전기의 공급량에 바이오매스비율을 곱하여 얻은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공급을 받은 양을 증명하는 서면, 공급을 받은 기간 및 공급을 받은 상대방, 그리고 당해 공급을 받은 신에너지등발전설비</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에 관계되는 발전이 바이오매스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신에너지등전기의 공급을 받은 양에 관계되는 바이오매스비율 및 그 산정 근거</p> <p>2. 신에너지등발전사업자: 신에너지등발전설비별 신에너지등전기의 공급량 및 당해 공급량을 증명하는 서면, 공급기간 및 공급의 상대방, 그리고 당해 인증에 관계되는 발전이 바이오매스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당</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해 신에너지등전기의 공급 량에 관계되는 바이오매스 비율 및 그 산정근거</p> <p>(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존) 제20조 ① 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고, 당해 기록이 필요에 따라 전자 계산기 그 밖의 기기를 이 용하여 직접 표시될 수 있 도록 하여 보존되는 때에 는, 당해 기록의 보존으로 써 법 제11조에서 규정하 는 당해 사항이 기재된 장 부의 보존을 대체할 수 있</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보고징수 및 출입검사)</p> <p>제12조 ①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전기사업자 또는 제9조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 전기사업자 또는 제9조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다.</p> <p>② 전항에 따른 보존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이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절차의 특례)</p> <p>제21조 다음 각 호의 자가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 제3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조직(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입출력장치를 포</p>	<p>◎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존 등을 하는 경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준(고시) (생략)</p> <p>◎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행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관한 기준(고시)</p> <p>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2년</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③ 전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경과조치)</p> <p>제13조 이 법률에 근거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p>		<p>함한다. 이하 같다)와,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당해 절차를 행하는 때에는,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당해 절차를 행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경제산업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서 입력하여야 한다.</p> <p>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p>	<p>경제산업성령 제11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행하는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전부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p> <p>1. 경제산업대신이 교부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서 입수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동조에서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서 입수한 기</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별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p> <p>(권한의 위임) 제14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별칙) 제15조 제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0만</p>	<p>※ 특별히 정하지 아니함</p>	<p>경제산업대신에 대한 기준 이용량을 신고를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가능한 기준이용량신고양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p> <p>2. 제3조제4항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성명 등의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가능한 전기사업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양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p>	<p>준이용량신고양식, 전기사업자의 성명등변경신고양식, 구좌개설신고양식, 구좌에 관한 성명등변경신고양식, 구좌폐지신고양식,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기록신고양식,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감소 또는 증량신고양식, 기존이용량의 감소 신청양식, 신에너지등발전설비 인증신청양식, 신에너지등발전설비 변경인증신청양식, 신에너지등발전설비 폐지신고양식, 신에너지등발전설비 성명등변경신고양식 및 의무이행량신고양식에</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p> <p>2.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3.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p>		<p>3.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구좌의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가 가능한 구좌개설신고양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p> <p>4.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성명 등의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가 가능한 구좌에 관한 성명 등 변경신고양식에 기록하여</p>	<p>입력할 수 있는 기능</p> <p>2.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와 통신할 수 있는 기능</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제17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p>		<p>야 하는 사항</p> <p>5.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구좌의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가능한 구좌폐지신고양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p> <p>6.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기록의 신고를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가능한 신에너지</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등전기상당량기록신고양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p> <p>7.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감량 또는 증량의 신고를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가 가능한 신에너지등전기상당량의 감량 또는 증량 신고양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p> <p>8. 법 제6조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기준이용량의 감소의 신청을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 가능한 기준이용량의감소 신청양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p> <p>9.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설비의 인증의 신청을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 가능한 신에너지등발전설비인증신청양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및 발전설비의 구조도 및 배선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p>10. 영 제4조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설비의 변경의 인증의 신청을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가능한 신에너지등발전설비변경인증신청양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p> <p>1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설비의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가능한 신에너지등발전설비폐</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p>지신고양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p> <p>12.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설비의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가능한 신에너지등발전설비성명등변경신고양식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p> <p>13. 법 제10조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의무이행상황의 신고를 하려는 자: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등
		비치된 파일에서 입수가 능 한 의무이행량신고양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エネルギー供給構造高度化法)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된 에</p>	<p>내각은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 제72호)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p>

법률	시행령
<p>너지 공급원의 상당부분을 화석연료가 점하고 있고, 에너지공급사업에 의한 환경에의 부하를 저감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 비추어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에너지공급사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공급의 확보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의)</p> <p>① 이 법률에서 '에너지 공급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전기사업자(전기사업법(1964년 법률 제170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전기사업자, 동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전기사업자 및 동항 제8호</p>	<p>제 1 조(연료제품)</p> <p>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석유가스, 가연성천연가스제품 및 코커스로 한다.</p>

법률	시행령
<p>에서 규정하는 특정규모전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2. 열공급사업자(열공급사업법(1972년 법률 제88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열공급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3. 연료제품공급사업자(화석에너지원료로 제조된 석유제품, 가연성 천연가스제품 그 밖의 제품 가운데 연소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연료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 그 밖의 제조에 준하는 행위로서 연료제품의 종류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에서도 같다)를 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항에서도 이와 같다)</p> <p>② 이 법률에서 '비화석에너지원'이라 함은 전기, 열</p>	<p>제2조(제조에 준하는 행위) 제2조,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표의 상란에서 규정하는 연료제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동표 하란에서 규정하는 대로 한다.</p> <p>1.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석유가스 및 코커스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행위 또는 수입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입하는 행위</p> <p>2. 가연성천연가스제품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행위</p> <p>제3조(원료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연료) 법 제2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석유아스팔트, 석유코커스, 가연성 천연가스제품, 코커스, 코올타르, 코커스_爐 가스 및 수소(원유, 석유가스, 가연성천연가스 또는 석탄에서 유래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p>

법률	시행령
<p>또는 연료제품인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화석연료(원유, 석유가스, 가연성천연가스 및 석탄과 이들로부터 제조된 연료(그 제조에 수반하여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연소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항에서도 이와 같다) 이외의 것을 말한다.</p> <p>③ 이 법률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이라 함은 태양광, 풍력 그 밖에 화석에너지원 가운데 에너지원으로서 영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④ 이 법률에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이라 함은 전기, 열 또는 연료제품인 에너지원으로서 비화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것(전기사업자 또는 열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서 비화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 또는 열을 다른 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제4조(재생가능에너지원) 법 제2조 제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양광 2. 풍력 3. 수력 4. 지열 5. 태양열 6. 대기 중의 열 그 밖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열(전2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바이오가스(동식물에서 유래하는 유기물로서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화석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p>제5조(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가 행하는 사업)</p>

법률	시행령
<p>⑤ 이 법률에서 '화석에너지원료'라 함은 화석연료 가운데 연료제품인 원료로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p> <p>⑥ 이 법률에서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이라 함은 화석에너지원료의 단위수 당 당해 화석에너지원료로부터 연료제품을 제조(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당해 연료제품을 회수한 후에 잔존하는 물건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p> <p>⑦ 이 법률에서 '특정에너지 공급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공급사업자 가운데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그 축진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p> <p>⑧ 이 법률에서 '특정연료제품 공급사업자'라 함은</p>	<p>법 제2조 제7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사업법(1964년 법률 제170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전기사업 또는 동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특정규모전기사업 2. 가스사업법(1954년 법률 제51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가스사업,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스도관사업 또는 동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가스사업으로서 가연성 천연가스제품의 제조(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조(가연성천연가스 제품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고, 제3자로부터 수탁하여 제조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7조 제2호 및 제8조 제2호에서도 이와 같다)를 하여 공급하는 사업 3. 휘발유의 제조(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조(휘발유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고 제3

법률	시행령
<p>연료제품 공급사업자 가운데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그 축진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 2 장 기본방침 등</p>	<p>자료부터 수탁하여 제조하는 것 및 제3자로부터 수탁하여 수입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7조 제3호 및 제8조 제3호에서도 이와 같다)를 하여 공급하는 사업</p> <p>제6조(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가 행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스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가스사업,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스도관사업 또는 동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가스사업으로서 가연성천연가스(액화한 것에 한한다. 제9조 제1호 및 제10조 제1호에서도 이와 같다)를 원료로 하여 가연성천연가스제품의 제조를 하여 공급하는 사업 2. 휘발유, 등유, 경유 또는 중유(제9조 제2호 및 제10조 제2호에서 '휘발유 등'이라 한다)의 제조를 하여 공급하는 사업

법률	시행령
<p>제 3 조(기본방침)</p> <p>① 경제산업대신은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 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공표한다.</p> <p>② 기본방침은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공급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 밖에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에너지수급의 장기전망,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상황,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p>	

법률	시행령
<p>이용에 관한 기술수준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에 유의하면서 정하여야 한다.</p> <p>③ 경제산업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환경대신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사정변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방침을 개정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의 개정에 준용한다.</p> <p>제 4 조(에너지공급사업자의 책무)</p> <p>에너지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기본방침이 정하는 바에 유의하여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
<p>제 3 장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에 관한 조치</p> <p>제 5 조(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p> <p>① 경제산업대신은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 이용의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가 행하는 사업별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목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진할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이용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그 밖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원활한 이용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목표를 달성하기 	

법률	시행령
<p>위하여 계획적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p> <p>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은 에너지공급의 장기전망,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상황,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에 관한 기술기준,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이용에 관한 경제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들 사정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p> <p>제 6 조(지도 및 조언)</p> <p>경제산업대신은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감안하여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p>제 7 조(계획의 작성)</p> <p>①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 가운데 전 사업 연도에 있어서 그 공급하는 전기(전기사업자가 다른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열(열공급사업자가 다른 열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한 것을 제외한다)의 공급량 또는 그 제조하여 공급하는 연료제품의 공급량이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있어서 규정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전 사업 연도에 공급하는 전기 또는 열의 공급량 또는 제조하여 공급하는 연료제품의 공급량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p>	<p>제 7 조(공급하는 전기 등의 공급량의 요건)</p> <p>법 제7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 가운데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공급하는 전기(다른 전기사업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다음 조 제1호에서도 이와 같다)에게 공급한 자를 제외한다)의 공급량이 5억 킬로와트 이상일 것 2.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 가운데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전 사업 연도에 있어서 그 제조하여 공급하는 가연성천연가스 제품의 공급량이 900억 메가줄 이상일 것 3.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 가운데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전 사업 연

법률	시행령
	<p>도에 있어서 그 제조하여 공급하는 휘발유의 공급량이 60만 킬로와트 이상일 것</p> <p>제8조(공급하는 전기 등의 공급량의 산정방법) 법 제7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동조 제1항의 전 사업 연도에 있어서 공급하는 전기 또는 제조하여 공급하는 연료제품의 공급량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 당해 전 사업 연도에 공급하는 전기의 공급량으로부터 당해 전 사업 연도에 다른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의 공급량을 감한 양 2. 가연성천연가스제품 당해 전 사업 연도에 제조하여 공급하는 가연성천연가스제품의 공급량

법률	시행령
<p>제 8 조(권고 및 명령)</p> <p>①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의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상황이 제 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p> <p>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p>	<p>3. 휘발유</p> <p>당해 전 사업 연도에 제조하여 공급하는 휘발유의 공급량</p>

법률	시행령
<p>에 대하여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 4 장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에 관한 조치</p> <p>제 9 조(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p> <p>① 경제산업대신은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에 의한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가 행하는 사업별로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목표 및 당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될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판단기준이 될 사항은 에너지 수급의 장기전망,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에 의한</p>	

법률	시행령
<p>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 상황,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기술기준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들 사정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도 및 조언) 경제산업대신은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에 의한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기준이 될 사항을 감안하여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및 조언을 할 수 있다.</p> <p>제11조(계획의 작성) ①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 가운데 전 사업 연도에 그 사용하는 화석에너지원료의 수량이 정령으로 정</p>	<p>제 9 조(사용하는 화석에너지원료의 수량의 요건) 법 제11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p>

법률	시행령
<p>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 제항에서 규정하는 판단기준이 될 사항에서 규정된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전 사업 연도에 사용하는 화석에너지원료의 수량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p>	<p>1.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 가운데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전 사업 연도에 그 사용하는 가연성천연가스의 수량이 120만 톤 이상일 것</p> <p>2.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 가운데 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전 사업 연도에 그 사용하는 원유 그 밖의 휘발유 등의 원료(다음 조 제2호에서 '원유 등'이라고 한다)의 수량이 300만 킬로와트 이상일 것</p> <p>제10조(사용하는 화석에너지원료의 수량의 산정방법) 법 제11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동조 제1항의 전 사업 연도에 사용하는 화석에너지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p> <p>1. 가연성천연가스</p>

법률	시행령
<p>제12조(권고 및 명령)</p> <p>①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의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상황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기준이 될 사항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p>	<p>당해 전 사업 연도의 가연성천연가스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가연성천연가스의 수량</p> <p>2. 원유 등</p> <p>당해 전 사업 연도의 휘발유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유 등의 수량을 각각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의 수량으로 환산한 수량을 합산한 수량</p>

법률	시행령
<p>②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합자원 에너지조사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특정연료제품공급 사업자에 대하여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잡 칙</p> <p>제13조(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4조(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가격에의 반영)</p>	

법률	시행령
<p>국가는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전기, 열 또는 연료제품의 공급대가에 적절히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그 비용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주지를 피하고 그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5조(보고 및 출입검사)</p> <p>① 경제산업대신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 또는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 또는 특정연료제품</p>	<p>제11조(보고 및 출입검사)</p> <p>① 경제산업대신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전기의 공급 또는 연료제품의 제조(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조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p>

법률	시행령
<p>공급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도 이와 같다) 및 공급에 관한 사항</p> <p>2.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량,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에 관한 설비상황,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이용에 관한 비용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p> <p>② 경제산업대신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원에게 특정에너지공급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연료제품의 제조 및 공급에 관한 설비와 이들 관련 시설과 관계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p> <p>경제산업대신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연료제품의 제조 및 공급에 관한 사항</p>

법률	시행령
<p>제16조(환경대신과의 관계) 경제산업대신은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 에너지원의 이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 당해 시책의 실시가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환경대신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력하여 행하여야 한다.</p>	<p>2. 사용하는 화석에너지원료의 수량,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설비상황 그 밖의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② 경제산업대신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의 직원에게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의사무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연료제품의 제조 및 공급에 관한 설비와 이들 관련시설과 관계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p>제17조(경과조치) 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의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규정할 수 있다.</p> <p>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벌 칙</p> <p>제19조 제8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법률	시행령
<p>제2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제21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p>	

법률	시행령
<p>부칙 초</p> <p>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검토)</p> <p>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경과한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관하여 검토를 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소요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태양광을 변환하여 얻어진 전기의 매수에 관한 가격 등의 태양광의 이용에 관</p>	<p>부칙</p> <p>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2009.8.28.)부터 시행한다.</p>

법률	시행령
<p>한 비용부담의 방법 그 밖의 태양광의 원활한 이용의 실효성의 확보에 관한 조치의 상황에 관하여 검토를 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소요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경제산업성고시 제160호, 2010년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方針)

일본의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에너지공급원의 상당부분을 화석연료가 점하고 있고, 에너지공급사업에 관한 환경에의 부하를 저감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에너지공급사업자가 자원의 고갈 우려가 적고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과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에너지공급사업자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원, 원자력 등의 비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태양광에 관하여는 재생가능에너지원 가운데에서도 잠재적인 이용가능량이 많고, 수요의 확대나 기술혁신에 의한 발전비용의 저감 등을 통하여 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태양광을 변환하여 얻어지는 전기(이하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라 한다)의 조달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은 이하의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의 조달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제시한다.

또한 화석에너지원료로서 이용되는 원유 등(화석에너지원료로서 이용되는 원유 그 밖의 휘발유, 등유, 경유 또는 중유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내의 석유제품수요는 감소경향에 있지만 장래에 있어서도 일본의 일차에너지공급의 상당정도를 점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중질유분해능력의 향상(중질유 분해장치의 장비율의 향상, 설비의 운전측면의 개선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콤비나트 연대의 촉진, 관련기술의 개발추진 등을 통하여 그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유 등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은 이하의 원유 등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제시한다.

○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조달에 관한 기본방침

제1 사업자가 강구해야할 조치에 관한 사항

에너지공급사업자 가운데 전기사업자는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 등을 정하는 제도(이하 '매수제도'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당해 전기를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제2 시책에 관한 사항

1. 매수제도

국가는 다음에 제시하는 기본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매수제도를 정하고 착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 (1) 전기사업자가 일정한 기간 적정한 가격으로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의 매수(이하 단순히 '매수'라고 한다)를 하는 것이 중요한 점
- (2) 매수가격에 대하여는 태양광발전에 관한 설비의 설치자의 부담수준, 투자회수에 요하는 연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정지원수준, 전력수요가의 부담수준 등을 감안하여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조달의 촉진에 기여하도록 설정함과 동시에 태양광발전에 관한 설비의 비용저감을 도모하면서 매수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중요한 점.
- (3) 매수기간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정지원수준, 전력수요가의 부담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투자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기간의 설정이 중요한 점.
- (4) 매수대상에 대하여는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량 가운데 당해 태양광발전에 관한 설비의 설치자가 스스로 소비하는 양을 공제한 여분의 양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가정, 공장, 사업소, 공적 시설 등의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점
- (5) 매수에 관한 비용을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의 공급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적절하게 모든 전력수요가에 대하여 전가하는 '전원참가형' 제도로 하는 것이 중요한 점.

2. 홍보 등

국가는 매수에 관한 비용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수제도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주지를 피하고 그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

으로부터의 매수제도의 내용에 관한 조회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원유 등의 유효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제1 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특정연료제품공급사업자 가운데 휘발유, 등유, 경유 또는 중유의 제조를 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는 석유를 둘러싼 제 정세를 감안하여 중질유분해능력의 향상, 콤비나트연대의 촉진, 관련 기술의 개발추진 등을 통하여 원유 등의 유효한 이용에 임하여야 한다.

제2 시책에 관한 사항

국가는 석유를 둘러싼 제정세를 감안하여 석유정제업자에 의한 원유 등의 유효이용에 관한 대응이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질유분해장치의 장치율의 향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착실하게 운용함과 동시에 석유정제업자에 의한 중질유분해능력의 향상을 위한 설비의 운전 측면의 개선 등을 촉구하고, 콤비나트 연대의 촉진, 관련기술개발의 추진 등에 관한 필요한 환경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관한 사항

현상에 있어서는 수소는 연료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적으로는 원유의 유효이용 및 CO2 저감책으로서 에너지효율이 높은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필요한 인프라 측면 등의 기

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울러 이러한 공급측면의 대응을 촉진하는 관점에서도 연료전지제품의 보급에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석유의 정제에 더하여 물류·판매부문도 포함하여 자동차나 가정 등에 있어서의 이후의 새로운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원유 등의 유효한 이용에 보조를 맞춘 대응이 행하여지는 것이 중요하다.